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9,300,000	11,979,000
일반회계	384,700,000	11,541,000
특별회계	14,600,000	438,000
기타특별회계	14,600,000	438,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113,000	63,3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85,000	56,55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880,000	26,4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58,000	52,7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844,000	25,32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532,000	135,960
치수사업특별회계	2,387,000	71,610
기반시설특별회계	201,000	6,0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53,70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